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 규제 65건 “개선·철회” 권고

-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 ⇒ “철회”
- ✓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의무와 중복되는 ‘어선위치 보고의무’ ⇒ “삭제”
- ✓ 의과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 “폐지”
- ✓ 관광단지에 골프장 포함시 공익성 불인정 ⇒ “사업특성 고려 공익성 판단”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 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23년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65건)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  붙임1)

* 개선·철회 건수 : ('19) 14건 → ('20) 32건 → ('21) 32건 → ('22) 54건 → ('23) 65건

-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 해수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하여 3만 9천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 또한, 복지부에 대하여는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 ‘신설·강화’ 규제는 법령 제·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는 반면, ‘기존’ 규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개선필요 과제 발굴

-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례  붙임2)

□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철폐·개선권고 주요 사례
- 【붙임2】 기존규제 개선 주요 사례
- 【붙임3】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0-2412)
		담당자	사무관	신현재 (044-200-2436)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제한 방지

- ▶ (국 토 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 사업시행자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 추진
 - *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259개 기관
 -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 ▶ (심사결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사업과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없이 '기타 공공기관' 이라고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 ☞ **철회권고**
- ▶ (개선효과) 민간기업이 기타 공공기관과 SPC를 구성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지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타 공공기관인 A 은행, B 도시공사, C 기업이 공동 출자한 SPC 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을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예고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자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도 계속해서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에 포함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해도 해수부장관에 위치 보고토록 한 중복규제 삭제

- ▶ (해 수 부) 어선 위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과 함께 어선 위치를 해수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토록 의무화(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등)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 ▶ (심사결과)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을 통한 위치 정보 전달과 중복되는 '조업시 어선위치 해수부장관 보고의무' 삭제 ☞ **개선권고**
- ▶ (개선효과) 약 3.9만척 연안·근해 어선 소유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완화

소형 어선으로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A 씨는 법 제정으로 앞으로 조업할 때마다 어선 위치를 알리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어선의 위치도 해수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불법조업 등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선위치 발신장치로 실시간 위치 파악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과 중복되는 '조업시 어선위치 보고' 의무가 삭제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조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③ 250만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부담 완화 (매년 8시간 → 격년)

- ▶ (복 지 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시간을 확대(240시간→320시간)하고,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심사결과) 요양보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격년 1회로 완화**하고, 개정안 시행(24.1) 이전에 **양성교육(240시간)**을 이수한 자는 추가 교육없이 '24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개선권고**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경우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 합격 필요
- ▶ (개선효과) **약 250만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부담 경감 및 교육시간 확대 이전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의 신뢰 보호**

요양보호사 10년차인 A 씨는 앞으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 매년 교육이수를 위해 하루 일을 못 하니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양성교육 24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교육을 80시간 더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해졌다.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격년 이수로 완화하여 250만 요양보호사의 교육부담이 완화(연 약 2,000만 시간)되었고, 법 시행 전 240시간 교육 이수자는 추가 교육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졌다.**

④ 인터넷 청약 적용범위의 급격한 확대를 제한하여 민간시장 위축 방지

- ▶ (국 토 부)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해야 하는 범위를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확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심사결과) '**100실 이상**'으로 급격한 규제강화시 **민간분양(대행)업계 위축 우려**가 있어 **생활숙박시설은 추가하되 '300실 이상'으로 유지**  **개선권고**
 * 한국부동산원 외에 민간업체도 인터넷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대권고
- ▶ (개선효과) **300실 미만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분양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 및 민간 분양업계의 급격한 시장 위축 방지**

사업자 A 씨는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공개모집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은 오피스텔의 규모나 입지, 입주 대상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 청약이나 민간 청약업체 대행 등을 선택·활용했는데, 앞으로 100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인터넷청약만 가능하게 되어 효과적인 분양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분양건축물 청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되, 대상 건축물 규모는 현행 300실 이상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민간분양업계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분양사업자의 선택권도 일정부분 보장하였다.**

⑥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준비기간을 확대하여 민간 부담 완화

- ▶ (농식품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23.4)되면서 **20마리 이상의 개·고양이 보호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준비기간 등 고려, 2년 유예)
 - * 신고 대상은 시설, 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 부여 (미준수시 행정처분)
 -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 (심사결과) 시설개선 준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시설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시행단계 세분화  **개선권고**
 - * 전국 136개 보호소 중 92개소(67.7%)가 20마리 이상 보유
- ▶ (개선효과) 신고제 준수를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준비기간 부족 해소**

⑥ 동일한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시 심의위에서 검증토록 하여 공정성 확보

- ▶ (공정위) 기업집단의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로 인식되는 자' 등 5가지를 **명문화**하고, 판단 결과에 이의제기시 담당 부서가 반영 여부 결정
 - ※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 ▶ (심사결과) '대표하는 자로 인식되는 자'는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어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 명확화하고, 기업의 이의제기시 검토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절차 마련**  **개선권고**
- ▶ (개선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23.5월 기준 82개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절차적 정당성 강화

⑦ 건설경기 부진 전망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트럭 신규등록은 제한하되 지역간 수급편차 완화, 자가용·용차의 수급조절 제약요인 해소방안 마련 권고

- ▶ (국토부) '24~'25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 등록 대수 증가 제한,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소형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금지(사업용 차량만 제한)
 -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 ▶ (심사결과) 콘크리트믹스트럭(레미콘트럭)의 경우, 건설경기 부진 전망, 공급자·수요자 동수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의 찬성 의결 등을 고려하여 원안 동의하되,
 - ① 건설경기 변화 등으로 **변경 필요성 발생시 지체없이 수급계획 재검토**
 - ② **지역별 수급 현황 및 불균형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간 수급편차 완화방안**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
 - ③ **자가용 증차실태 및 용차**(특정업체 소속이 아닌 차량)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자가용·용차의 수급조절 기능 제약요인 해소방안 마련**  **부대권고**
- ▶ (개선효과) 향후 레미콘트럭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완화 및 자가용·용차의 수급 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원활한 레미콘 공급 및 건설공사 지연 방지**

①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대학 학사 출신비율 제한 완화

- ▶ (기존) 대학교원(교수) 채용시 특정대학(본교) 학사 출신이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의과대학의 교원확보 및 연구·진료에 차질 발생
- ▶ (개선)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비율 제한 규정 적용 제외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23.12.4~'24.1.15)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의과대학은 본교 출신 이외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데, 본교 출신이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총장 A 씨는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부족해지면 지역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 의학계열 전임교원 채용은 예외를 인정받아 의과대학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관광단지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하도록 기준 합리화

- ▶ (기존)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공익성 인정이 필요하나, 골프장이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성 불인정
- ▶ (개선) 골프장이 포함되어도 구체적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참작기준 마련('23.6)

○○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토지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사업 내용에 골프장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다.

☞ 골프장 면적 비율 등을 고려, 공익성 인정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③ 국외여행 인솔자 지정 교육기관에 원격대학 포함

- ▶ (기존) 국외여행 인솔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법정 고등 교육기관인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
- ▶ (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원격대학 추가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23.6)

직장인 A 씨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원격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려 했으나 원격대학은 지정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원격대학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설치 및 구성**

-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능**(법 제24조)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역할**

- (신설·강화규제 심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심사 의무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심사 요청시 10일 이내 중요규제 여부 결정 및 45일 이내 규제 철회 또는 개선 권고 등 심사 완료(법 11~14조)
- (기존규제 점검·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 부처별 이행점검, 재검토 기한도래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규제 정비 등 추진

* 일정 기간마다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완화 추진('23년 375건)